

# 2026년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 지원과제 모집 공고

중앙정부-지방정부 협력 기반의 지역 특화산업 혁신과 로봇산업 발전 융합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「2026년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」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4월 17일  
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

## 1. 사업개요

### □ 사업목적

- 지역별 특화산업 발전과 로봇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 특화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

### □ 사업내용

- 사용자 경험(UX) 기반 지역 특화로봇의 대규모 확산을 견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역특화로봇 거점 구축

사업목적	지역 로봇 플래그쉽(특화로봇) 거점구축		
사업성격	지역 특화거점 확보	+	지역 특화거점 운영
사업내용	테스트베드, 지원(체험)센터, 플랫폼 등 특화거점(인프라)을 확보	+	사용자경험(UX) 확산을 위한 특화거점(인프라)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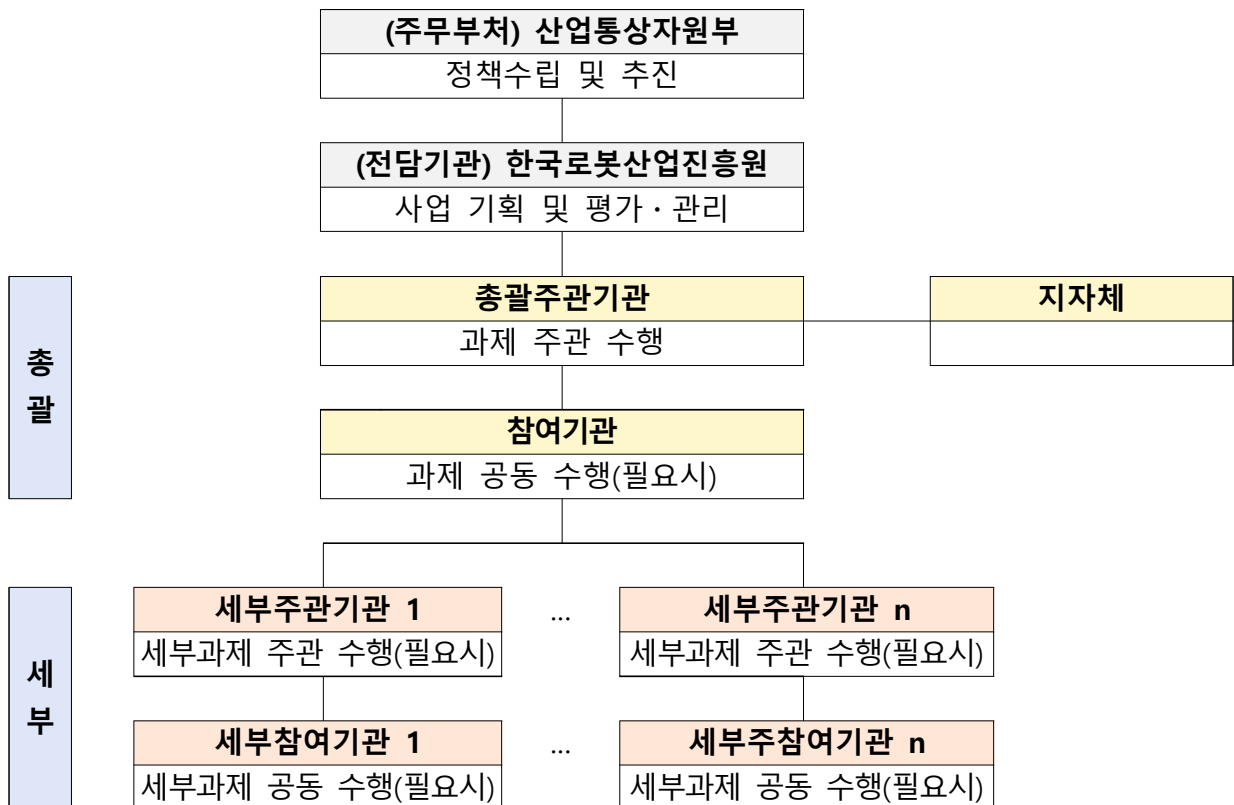
\* 산업현장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로봇의 활용 또는 체험 등 사용자 경험(UX) 확산을 위한 지역 특화로봇 거점(인프라) 구축을 지원

## 2. 추진체계

### ○ 일반형 과제



### ○ 통합형(총괄-세부) 과제



### 3. 지원규모 및 분야

□ (예산 규모) 총 29억원 이내(국비기준)

선정과제 수	국비 지원규모	비고
국비 지원금 소진 한도 내	총 29억원 이내 (과제별 9.5억원 내외)	국비 : 지방비 매칭 필수 (국비 50% : 지방비 50%)

□ 지원기간(수행기간)

- 협약일 ~ '26. 12. 31. (약 7개월)

□ 지원분야

#### < 로봇 플래그십 지역거점 구축사업 지원 품목 >

분야	구분	품 목 명	주관기관	과제유형	
				추진체계	공모형태
특화제품	1	4족보행로봇	비영리기관	일반형, 통합형 (모두 가능)	품목지정형
특화업종	2	농업(+안전)			
기타품목	3	푸드테크로봇			
	4	첨단제조시팩토리로봇			

\* 품목 중복지원은 불가하며, 품목별 상세 내용은 품목개요서 참조

- 일반형 과제 : 총 1개의 단일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
  - 주관기관 : 일반형 과제의 경우,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(기업 포함)
  - 참여기관 : 일반형 과제 또는 총괄형 과제(총괄-세부)의 총괄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(기업 포함)
  - 통합형 과제 : 총괄과제, 세부과제로 이루어진 과제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각 과제의 수행결과가 연계(구축거점이 영리기업인 경우 통합형 과제로 신청 필수)
  - 총괄주관기관 : 총괄형 과제의 경우, 총괄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
  - 세부주관기관 :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(기업 포함)
  - 세부참여기관 : 세부과제에 참여하여 세부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(기업 포함)
  - 세부참여 : 세부과제에 참여하여 세부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(기업 포함)
  - 품목지정형 : 품목(제품군, 업종군 등)만 제시(지정)되며 수행기관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
- ※ 기타 용어 정의는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제3조(용어의 정의) 참고

□ 지원대상 주관기관은 과제 기획 및 수행의 주도적 역할이 가능해야 함

구분	주관기관	제안자격
특화제품	비영리*	1) 본 사업의 목적 품목에 적합한 과제 제안 필요 2)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및 협력 전제 필요
특화업종		
기타품목		

\* 지자체, 대학, 연구기관(정출연, 전문연, 비영리 등), 공기업/공공기관, 기타 비영리 등

\*\* 효율적 과제수행을 위한 컨소시엄 자율적 구성을 통해 영리기업 참여 가능

□ 지원기준

구분	내용							
사업비 지급·매칭 방식	○ 국비지원금에 상응하는 지자체지원금 출연(국비:지방비=50:50) 필요 * 지방자치단체 지원금(지방비)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부담 * 지방비 매칭 확약서 필수, '26년도 지자체 추경예산 활용 가능							
	○ 거점구축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현물 출연이 가능하나 지방비 50% 매칭 금액 중 최소 20% 이상은 현금 매칭 필수 * (예시) 국비 9.5억원 신청하는 경우 지방비는 9.5억원 매칭(현금은 1.9억원 이상)							
	○ 로봇이 투입되는 특화거점(테스트베드 등)이 영리기업인 경우 해당 거점에 소요되는 사업비 기준금액에 아래의 비율만큼 민간부담금(현금) 필수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대기업</th> <th>중견기업</th> <th>중소기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민간부담금 매칭비율</td> <td>30%</td> <td>20%</td> <td>1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민간부담금 매칭비율	30%	20%
구분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				
민간부담금 매칭비율	30%	20%	10%					
	○ 국비지원금(국비)은 협약체결 후 지급 *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할 수 있음							
사업비 편성	○ 사업비 세부 항목에 대한 예산 편성은 공고문상에 별도 명시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을 최우선으로 적용							
연구시설 장비·재료비	○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로봇(또는 로봇시스템)의 수요처 및 공급처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를 인정 ○ 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과 관련해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준용							
인건비	○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10% 이내로 산정 * 참여연구원은 10% 이상의 참여율(인건비계상률)로 인건비 계상 필요							
외주용역비	○ 외주 용역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							
간접비	○ 직접비(현금) 합계의 7% 이내로 산정 *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<별표5>							

## 4. 선정제외

### □ 선정제외

❖ 선정제외(사전지원제외 등)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 과제선정 및 협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협약 체결이 취소될 수 있음

-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 목적 및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
-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에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,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, 전담기관과의 사전 조율 없이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
- 총괄주관기관,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주관기관의 장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또는 진흥원 동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총괄주관기관, 주관기관, 참여기관,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진흥원 소관 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, 정산금 납부 등)을 불이행 하고 있는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(신청)기관(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은 적용 예외), 수행(신청)기관의 장(단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),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. 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○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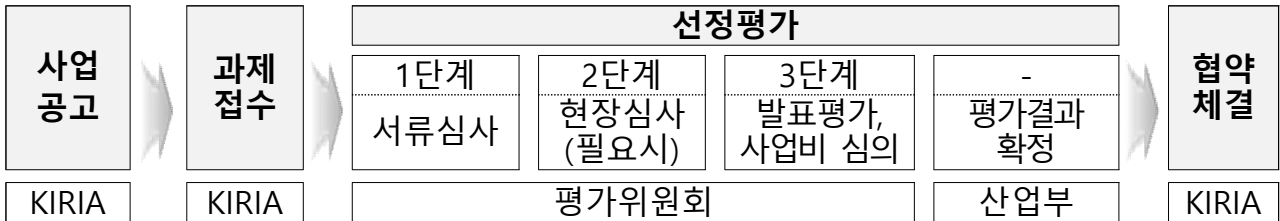
구분	사전 지원제외 기준
<p><b>검토 기준</b>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업의 부도</li> <li>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)</li> <li>3.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)</li> <li>4. 파산·회생절차,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)</li> <li>5. 사업개시일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였고,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 (단,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"BB"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T6" 이상인 경우 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 비율이 50% 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.) (※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,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)</li> <li>6.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</li> <li>7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</li> </ol>
<p><b>조치</b></p>	<p>○ 수행기관, 수행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의 경우 "사전 지원제외 대상"으로 처리</p>

선정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.

※ 기타 세부 내용은 「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」(2026.02.13) <별표2> 참고

## 5.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

### □ 선정(평가) 절차



### □ 선정(평가) 일정

주요내용	추진기관	일정
사업 공고	진흥원	'26. 4
사업계획서 접수	주관기관 → 진흥원	'26. 5
사전검토	진흥원(평가위원회)	'26. 5
선정평가(발표평가, 사업비심의 등)	진흥원(평가위원회)	'26. 5
선정평가결과 확정	산업통상자원부	'26. 5
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	진흥원 ↔ 주관기관	'26. 5
수정사업계획서 접수	진흥원 ↔ 주관기관	'26. 5
협약체결 및 국비지원금 지급	진흥원 ↔ 주관기관	'26. 6~

※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# □ 평가방법

- (서류심사)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, 신청자격(사전지원 제외 대상) 등에 대한 검토
- (현장심사) 필요시 프로젝트(과제) 컨소시엄 구성 신청기관의 의지 파악을 위해 현장 확인 병행
- (발표평가) 사업계획서 중심으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발표평가 형태로 진행
- (사업비 심의) 선정과제별 국비지원금 확정 심의

## □ 평가기준

구분	평가항목	평가내용
사업목표 (40)	목적 부합성(15)	◦ 플래그쉽사업 기본목적, 기획의도와 해당 신청과제와의 부합성
	추진전략 적정성(10)	◦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
	성과지표(15)	◦ 성과지표 선정 타당성, 목표수준의 적절성
추진체계 (30)	지자체 의지(10)	◦ 지역 플래그쉽 거점구축에 대한 지자체 의지
	추진체계 적정성(10)	◦ 수행기관별 역할 및 추진체계 적정성
	추진역량(10)	◦ 책임자, 참여연구원 역량, 유사 과제 수행경험 및 성과 ◦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
기대효과 (30)	성공가능성(10)	◦ 지역 플래그쉽 거점의 지속가능성 및 향후 활용성 ◦ 추진계획의 성공가능성
	사업비 구성(10)	◦ 사업비 구성내역 적절성
	지역적 파급효과(10)	◦ 지역사회 및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(고용증대, 생산성 향상 및 매출증대 등)

## 6.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

### □ 신청기간

○ (공고기간) '26. 4. 17.(금) ~ 5. 12.(화), 26일간

\* (접수기간) '26. 5. 6.(수) ~ 5. 12.(화) 18:00까지, 7일간

### □ 접수방법

○ 사업관리시스템(PMS)을 통해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

PMS	공고번호	KIRIA-PMS-2026-019호	
	접수방법	일반형	주관기관 신청
	총괄형	총괄주관기관 신청	

- 과제신청은 사업관리시스템(PMS)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(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불가)
  - 온라인 과제신청 및 입력 안내는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([www.kiria.org/pms](http://www.kiria.org/pms)) '공지사항' 내 매뉴얼 참고
  -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([www.kiria.org/pms](http://www.kiria.org/pms)) '과제신청'을 통해 온라인 접수 및 접수증 확인 필수
  -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과제접수 요망

#### ○ 문의처

- (사업내용 관련) 기획예산팀 이태희 책임(053-210-9913, [thlee@kiria.org](mailto:thlee@kiria.org))
- (사업시스템 관련) 고객센터 070-4047-7287

## □ 제출서류

No	제출서류	파일형태	필수여부	대상
1	(양식1) 사업계획서	HWP, PDF	필수	주관기관
2	(양식2) 과제 참여인력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	PDF	필수	수행기관
3	(양식3) 참여의사 확약서	PDF	필수	수행기관
4	(양식4)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PDF	필수	수행기관
5	(양식5) 현금,현물 납입 확약서	PDF	필수	지자체, 수행기관
6	(양식6) 사용인감계 (해당 시)	PDF	해당 시	수행기관
7	(양식7)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(해당 시)	PDF	해당 시	수행기관
8	(양식8)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(해당 시)	PDF	해당 시	수행기관
9	사업자등록증 사본	PDF	필수	수행기관
10	법인등기부 등본	PDF	필수	수행기관
11	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및 표준재무제표	PDF	해당 시	수행기관 (비영리 제외)
12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PDF	해당 시	
13	신용평가보고서	PDF	해당 시	
14	(양식9) 재무건전성 자가진단 확약서	PDF	해당 시	

## 7. 법령 및 규정 등

### 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-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
-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

### □ 기타

-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
-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

※ 상기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, 진흥원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(안내)을 따름

## 7.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절(一切) 반환되지 않으며, 평가결과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
- 신청자(기업,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직인이 필요한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
- 선정평가는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,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  - \*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선정방법 및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 제기 가능
- 본 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(PMS), 사업비관리시스템(RCMS) 필수 적용 대상 사업이며, 사업비 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에서 지정하는 계좌와 지침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
  - \* '25년부터 사업관리시스템(PMS)이 사업비관리시스템(RCMS)과 연계되어 적용
- 사업계획서 제공양식 등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
- 선정과제 대상으로 협약체결을 위해 사업계획과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제출 및 관련 내용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정기관은 성실하게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
-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
- 과제에 선정된 수행기관 또는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수혜기업은 본 사업 또는 본 사업과 연계된 사업의 홍보, 전시, 행사 등과 관련된 자료 요구 또는 참여 요청에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함

- 사업 수행결과로 취득되는 로봇 등 유·무형적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은 관리지침에 따르며, 수행기관 상호 간 별도 자율적 합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(단, 별도 합의의 경우 전담기관 확인을 거쳐 협약서 또는 협약서 부속서류에 명기 필요)
- 지원기간(수행기간)의 협약일은 협약서상에 명시된 수행기간을 의미
-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인건비계상률(참여율) 10%이상 계상
- 참여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‘인건비 계상률’ 개념을 준용함
- 본 사업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, 3책 5공)를 적용하지 않으나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인건비 계상률(참여율) 규정은 적용함
- 신청과제의 추진내용 및 특성에 따라 본 공고문상에 명시된 지자체 지원금, 민간부담금 매칭비율을 초과한 추가 매칭은 가능
- 플래그쉽 사업의 추진목적에 고려, 해당 과제 수행종료 이후라도 사업공모 절차를 통해 해당 과제에 대한 후속 또는 고도화 지원 가능
- 거점구축의 장소가 영리기업인 경우에도 지방비 매칭의 주체가 비영리기관인 경우 총괄형으로 신청할 것

구분	수행기관	성격	역할
총괄과제	총괄주관기관	비영리	총괄관리, 지방비 매칭 등
세부과제	세부주관기관	영리	거점구축, 테스트 베드 실증

-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 수행기관·기업은 로봇 활용 데이터의 분석·활용을 위해 향후 로봇 데이터팩토리\*와 연계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을 권고
- \* 산업통상부는 로봇 AI개발 가속화를 위해 환경·동작 데이터 확보 및 AI 학습을 지원하는 '로봇 데이터팩토리'를 '27년부터 구축할 계획
- 실증사업 수행기관·기업은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,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 구축·연동 등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